

수수료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유레카자산운용(주)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(이하 “관련 법규”라고 한다)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수수료의 종류) 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.

1. 보수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.
 -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나. 판매보수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다. 신탁업자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마. 성과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금전(법 제86조, 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계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 가능)
2. 수수료
 - 가. 판매수수료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
 - 나. 환매수수료: 집합투자계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.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됨

제4조(수수료 부과 기준) ①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,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
제5조(수수료의 부과 절차) ①수수료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,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회사는 집합투자계약상의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

제6조(공시)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 제3항에 의거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.